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54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제4조)
- 나.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규정 명시(제5조)
- 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용(제7조~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4. 4. 11. ~ 5. 2./ 21일 간)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제2호(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는 금액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u>평균금액의 200%</u>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u>평균금액의 150%</u>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적립기준(예)	계	21년	22년	23년
(현행)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	1,796	미충족	1,796	미충족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	6,320	미충족	6,320	미충족

- 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6조(이자)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며,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규정하여 내실있는 통합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현재까지 위원회 기능을 하였던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함.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성별비율을 명시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sup>1)</sup>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sup>2)</sup>에 따라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20년 11월 5일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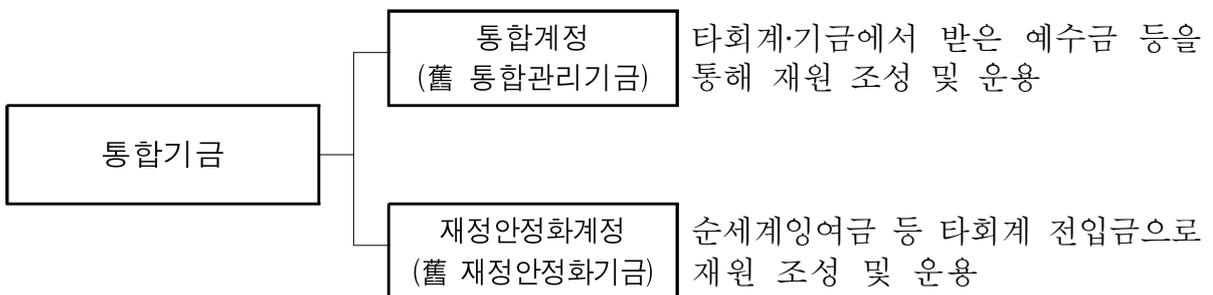
- 
- 1)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2)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구(區)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sup>3)</sup>의 잔액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서 참조)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기금명	설치 목적	재원 조달	조성액(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금액(백만원)
통합계정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타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55,129	12,384 (원리금 상환 등)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전입금 및 이자수입	1,823	

- 이번 전부개정은 '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sup>4)</sup> 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①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②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정>('23.12월 기준)



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권고한 바 있음. (2023.10.23.)

정 신설 ③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가 있음.

- ①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관련, 현재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기에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보여짐.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sup>5)</sup>에서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은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률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본 개정 조례안의 ②제5조 및 제6조 관련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sup>6)</sup>에서도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개정하는 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

### ③ 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의4(재정자금의 통합운용) 제4항 : 통합지출판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음

- 한편, 동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었으나, ③통합기금 관련 전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정성 있는 심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위원회 구성이 처음이니만큼, 기금 분야에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자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임.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55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품 구매 유통환경의 변화, 전통시장 재개발 및 미숙한 운영, 단  
기적 사업 지원으로는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노하우 공유, 자문 등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강화하  
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장 번호 및 명칭 신설(안 제10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협의회 설치(안 제37조)

다.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안 제38조~제40조)

라. 운영세칙(안 제4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4. 25.~5. 16./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협의회 설치)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38조(협의회 구성)~제42조(운영세칙)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검토 결과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회 주요 업무는 ▲시장 등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제시 ▲시장 현대화 사업 등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홍보 활동인 바 이 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제19조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 “상권관리기구”에서 상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구성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성격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2)에 따라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속하는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기에 협의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3)에서 요구하는 요건 중 제1호(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우리 구의 타 위원회 중 협의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없기에 같은 법 제5조제2항4)과도 저촉되는 사항은 아님.

- 
- 1)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이하생략)
-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호5)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이며, 안 제38조(협의회 구성)에 따라 해당 협의회 구성원 중 간사 1명(시장 업무 담당 팀장)을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인바, 효율적인 활동과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공무원(부서장, 구의원) 임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어 보임.

---

4)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참 고 자 료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이하생략)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 1.~5.(생략)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참 고 자 료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56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5년 본예산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10. 5. ~ 10. 25./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2항(취업 지원 사업)에서 구직활동 촉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해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 검토 결과

- 미취업자에 대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 타 자치구의 경우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sup>1)</sup>, 영등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시행. 2023.11.9.)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본 안건은 관내 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

1)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4개의 자치구(양천구,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가 있으며, 일자리 정책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시 내 17개 자치구 중 미취업자에 대하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음.

6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관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sup>2)</sup>에 따라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작년 제24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sup>3)</sup>이 신설되어, 올해부터 응시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당 조항과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조항의 지원대상 중복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청년)의 사람이고, 본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64세 이하(중장년)의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범위가 상이하야 중복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2)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자격증 취득,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조항 비교

조례명	관련조항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①~③(생략)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자격증 취득,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19세~39세</u>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어학, 한국사, 국가공인 자격시험 등	<u>2024년 예산</u> <u>기(既) 반영</u> <u>10만 원 *</u> <u>500명</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①(생략) ② 구청장은 구직활동 촉진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게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40세~64세</u> 미취업자 (예정)	국가공인 자격시험	<u>2025년</u> <u>본예산 반영</u> <u>예정</u> <u>10만 원 *</u> <u>200명</u>

# 참 고 자 료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  
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  
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  
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  
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  
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  
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

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